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수신 대한건축사협회장(건축법제국 법제관리팀장)

(경유)

제목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 관련 불편사항 접수
홍보 협조 요청

1.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근거하여 최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00호(2016.03.28.)에 의거하여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77호(2018.12.17.)에 의해 재선정되어 건축물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본 협회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임직원에 의하여 업무상 불법·부당한 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합니다.
4. 따라서 소속 임직원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수수,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 고압적인 태도 등의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의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부정신고센터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우측 하단] 접수

6. 신고자는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되며, 해당 사항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하여 해당 직원의 내부 규정 상 부적합한 업무 수행 사항이 확인되면 징계, 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업무 협의는 해당 기초센터 직원이 아닌 상위기관인 중앙 또는 광역센터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대리 유혜미 과장 이희수 부장 김원식 국장 오창석 사무총장 홍현근 회장 김광환

협조자

시행 중앙센터 2021-438 (2021. 09. 10.) (접수) ()

우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01호 / www.atac.or.kr

전화 02)796-4280 / 전송 02)796-4281 / e-mail kappd@kappd.or.kr / 비공개